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324
------	------

2020. 3. 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0.3.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가.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국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 규정을 정비하고,

나. 제로페이 서비스 안정화 및 제로페이 운영 상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제로페이담당관 직위를 신설하고자 정원을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2부터 별표5까지).

나. 본청의 4급 정원을 1명 증원함(안 별표4).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준과 정원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제로페이
서비스의 안정화와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로페이담당관(4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나.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및 정원 신설(안 제3조, 안 제4조, 안 별표2부터 안 별표5까지)

-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2019.11.)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7,055명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률 제·개정 내역>

- ▶ 신분관련 : ① 「소방공무원법」, ② 「지방공무원법」,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④ 「소방기본법」
- ▶ 재정관련 : ① 「지방교부세법」, 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서울시공무원의 정원관련 규정에서 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과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도로 신설하였음.
- 이는 관계 법령의 개정입법취지에 맞춰 서울시공무원 중에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신분 체계에 맞도록 정원관리와 인력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입법예고(2020.1.7.~2.17.) 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이하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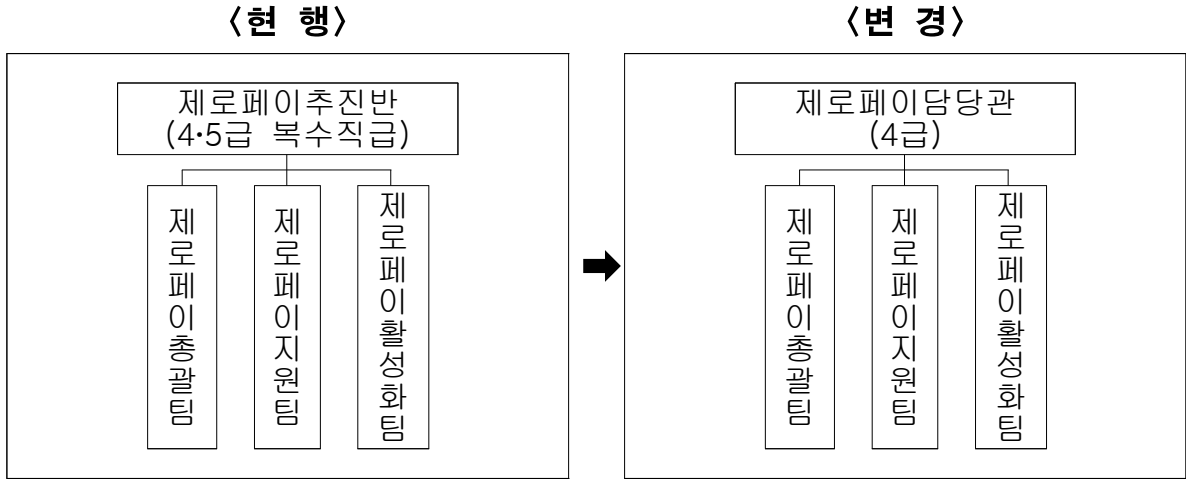
따르면, 서울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7,196명이며, 이 정원의 2% 이내에서 증감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안」 이 입법예고대로 제정·시행되면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7,052명에서 7,339명까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이번 정원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종전 규정과 같이 하한선에 가까운 7,055명으로 정하고 있어 향후 소방인력 소요 발생 시 후속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안 제출시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안」 이 입법예고 중인 관계로 정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추후 지역별·직급별 소요 인원을 산정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 제로페이담당관 신설(안 별표4)

-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신규 서비스 발굴, 가맹점 확대 등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제로페이추진반’을 ‘제로페이담당관’으로 격상하고, 제로페이담당관 직위 설치를 위해 4급 1명을 증원하고 있음.
- 그동안 제로페이추진반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산하의 4·5급 복수직급 조직¹⁾(3팀·15명)으로 구성·운영되어 왔음.

<제로페이담당관 신설안>



- 2019년 도입된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이용확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1일 평균 사용건수가 14,934건, 사용액은 5억 8천여 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제로페이 월별 1일 평균 이용 실적(전국)>

(단위 : 건, 천원)

월	건수	금액	월	건수	금액	월	건수	금액
'19.1	514	8,650	'19.6	8,944	169,308	'19.11	17,839	423,107
'19.2	1,033	18,830	'19.7	10,736	239,897	'19.12	13,989	457,625
'19.3	1,904	39,920	'19.8	11,455	254,364	'20.1	12,310	427,726
'19.4	6,582	85,340	'19.9	12,987	310,575	'20.2	14,934	581,794
'19.5	6,919	136,581	'19.10	16,066	370,330	'20.3	-	-

※ 2020.2월 실적은 1~12일까지 기간 평균임

-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결제기능 탑재, ▶공공시설

1) 복수직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로 서울시는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3·4급 복수직급 5개, 4·5급 복수직급 10개를 운영할 수 있음.

온라인 결제 확대, ▶서울사랑상품권 연동, ▶글로벌 간편결제 업체와의 연계,
▶해외 관광객 대상의 서비스 제공 등의 신규 서비스를 확대·추진하고 있음.

- 모바일 중심의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기존 제로페이 서비스의 안정화와 공공분야의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담기구화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비해 비교우위 요인이 부족하고, 전방위적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이 신용카드 대비 31.8%에 그치고 있고(2019.12.5. 기준), 이용실적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제로페이가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지는 의문시 됨.

<신용카드 대비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신용카드 가맹점 수*	제로페이 가맹점 수	가맹률
전국	2,524,962	318,231	12.6%
서울	533,029	169,371	31.8%

※ 출처 : 비씨카드(2018.6월 현재 신용카드 유효 가맹점 기준)

- 현재 제로페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전국 단위의 제로페이 기본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통합 플랫폼 관리를 수행하는 등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이관되고 있음.
- 또한, 민간기구인 금융결제원은 제로페이 허브시스템을 운영하고,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2019.9.20. 출범)이 공동가맹점 모집·관리,

플랫폼 운영·관리, 부가서비스 개발 및 이용자 편의 지원, 모바일 상품권, 지역 화폐 등 제로페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제로페이 핵심 사업이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추진하거나 이양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시의 제로페이 관련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課)를 설치할 경우 5급 4명 이상이 포함되는 업무량을 일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제6조제5항), 3개 팀으로 구성된 제로페이담당관이 이러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제로페이담당관 직위 신설은 제로페이의 이용실적 개선과 기술표준화, 민간 확산의 가능성, 정부와 민간으로의 업무 이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소방 공무원 관련 규정의 정비와 제로페이담당관 신설을 위한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규정한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안」의 제정·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조례에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비점이 남아 있음.

- 또한, 제로페이담당관의 신설은 중앙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법령에 규정된 기구 설치요건 미충족 문제, 향후 예상되는 업무량의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의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4
----------	------

제출년월일 : 2020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국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 규정을 정비하고,
- 나. 제로페이 서비스 안정화 및 제로페이 운영 상시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제로페이담당관 직위를 신설하고자 정원을 조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 나. 본청의 4급 정원을 1명 증원함(안 별표 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21조, 「소방기본법」 제3조의2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20. 1. 16. ~ 1. 20..)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8,561명”을 “18,5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10,415명”을 “10,416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원”을 각각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제1항 중 “정원의”를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의”로, “별표3과”를 “별표4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2의 제목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 무 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1,507					
정무직 계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10,537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3급	20	10		1	9	
3·4급	5	5				
4급	247	146	17	8	67	9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20					
전문경력관 소계	104					
별정직 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387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25					
지도직 계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20					
총 장	1			1		
교수 등	450			450		
조 교	69					

[별표 3]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2.2% 이내	6.3% 이내	7%이내	15% 이내	33% 이내	35.5% 이상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 무 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055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7,02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 정원의 총수는 <u>18,561</u>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u>10,415</u>명</p> <p>2. ~ 5. (생략)</p>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② <u>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18,562</u> -----.</p> <p>1. ----- -----<u>10,416</u>명</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u>----- -----.</p> <p>② <u>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u>----- -----.</p> <p>③ <u>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u></p>
<p>제4조(직급별 정원) ① <u>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u></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직급별 정원) ① <u>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u>----- -----<u>별표 4와</u> -----</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② <u>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과 같다.</u></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 이상</td>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8급·9급</td> <td>전문경력관</td> </tr>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4.5%이내</td> <td>34.5%이내</td> <td>35.5%이내</td> <td>11%이상</td> <td>1%이내</td> </tr> </table> <p>2. 연구직·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구분</td> <td colspan="2">연구직</td> <td colspan="2">지도직</td> </tr> <tr> <td>연구관</td> <td>연구사</td> <td>지도관</td> <td>지도사</td> </tr> <tr> <td>비율</td> <td>17% 이내</td> <td>83% 이상</td> <td>10% 이내</td> <td>90% 이상</td> </tr> </table> <p>3. 소방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구분</td> <td>소방장</td> <td>소방령</td> <td>소방경</td> <td>소방위</td> <td>소방장</td> <td>소방교</td> <td>소방사</td> </tr> <tr> <td>이상</td> <td>령</td> <td>경</td> <td>위</td> <td>장</td> <td>교</td> <td>사</td> </tr> <tr> <td>비율</td> <td>1%이내</td> <td>2.2%이내</td> <td>6.3%이내</td> <td>7%이내</td> <td>15%이내</td> <td>33%이내</td> <td>35.5%이상</td> </tr> </table> <p>4.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상당 이상</td> <td>5급상당</td> <td>6급상당</td> <td>7급상당</td> <td>8급·9급상당</td> </tr> <tr> <td>비율</td> <td>34% 이내</td> <td>50%이내</td> <td>10%이내</td> <td>5%이내</td> <td>1%이상</td> </tr> </table>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1%이상	1%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17% 이내	83% 이상	10% 이내	90% 이상	구분	소방장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이상	령	경	위	장	교	사	비율	1% 이내	2.2%이내	6.3%이내	7%이내	15%이내	33%이내	35.5%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34% 이내	50%이내	10%이내	5%이내	1%이상	<p>[별표 2]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 이상</td>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8급·9급</td> <td>전문경력관</td> </tr>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4.5%이내</td> <td>34.5%이내</td> <td>35.5%이내</td> <td>11%이상</td> <td>1%이내</td> </tr> </table> <p>2. 연구직·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구분</td> <td colspan="2">연구직</td> <td colspan="2">지도직</td> </tr> <tr> <td>연구관</td> <td>연구사</td> <td>지도관</td> <td>지도사</td> </tr> <tr> <td>비율</td> <td>17% 이내</td> <td>83% 이상</td> <td>10% 이내</td> <td>90% 이상</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3.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상당 이상</td> <td>5급상당</td> <td>6급상당</td> <td>7급상당</td> <td>8급·9급상당</td> </tr> <tr> <td>비율</td> <td>34% 이내</td> <td>50%이내</td> <td>10%이내</td> <td>5%이내</td> <td>1%이상</td> </tr> </table> <p>[별표 4]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1%이상	1%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17% 이내	83% 이상	10% 이내	90% 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34% 이내	50%이내	10%이내	5%이내	1%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1%이상	1%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17% 이내	83% 이상	10% 이내	90% 이상																																																																																																				
구분	소방장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이상	령	경	위	장	교	사																																																																																																	
비율	1% 이내	2.2%이내	6.3%이내	7%이내	15%이내	33%이내	35.5%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34% 이내	50%이내	10%이내	5%이내	1%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1%이상	1%이내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17% 이내	83% 이상	10% 이내	90% 이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34% 이내	50%이내	10%이내	5%이내	1%이상																																																																																																			

현 행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8,561					
정무직 계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10,536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3급	20	10		1	9	
3·4급	5	5				
4급	246	145	17	8	67	9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20					
전문경력관 소계	104					
별정직 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387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25					
지도직 계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소방공무원 계	7,055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7,020					
교육공무원 계	520					
총 장	1			1		
교수 등	450			450		
조 교	69					

<신 설>

<신 설>

개 정 안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1,507					
정무직 계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10,537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3급	20	10		1	9	
3·4급	5	5				
4급	247	146	17	8	67	9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20					
전문경력관 소계	104					
별정직 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387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25					
지도직 계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삭제)						
교육공무원 계	520					
총 장	1			1		
교수 등	450			450		
조 교	69					

[별표 3]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내	2.2%내	6.3%내	7%이내	15%내	33%내	35.5%이상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 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055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7,020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총정원이 18,561명에서 18,562명으로 총 1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 (서기관 +1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억원 미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문제호(☎ 2133-6724)